

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
일부개정법률안
(이명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519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2. 9.

발의자 : 이명수 · 권석창 · 홍문표

합진규 · 정태옥 · 박인숙

한선교 · 경대수 · 박찬우

성일종 · 강효상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 제17조제1항제36호에서 “「군사시설보호법」 제3조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협의”로 규정되어 있는데, 이 중 「군사시설보호법」은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」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「군사시설보호법」으로 규정되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.
따라서 「군사시설보호법」을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」으로 변경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(안 제17조제1항제36호).

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
일부개정법률안

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
개정한다.

제17조제1항제36호 중 “「군사시설보호법」 제3조에”를 “「군사기지
및 군사시설보호법」 제2조제6호에”로, “제10조제1항에”를 “제13조제1
항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